



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

채원영 연구원

-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, 실손의료보험, 공시이율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2013년 중 시행할 예정임.
- 첫째,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자동차보험¹⁾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,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음.
 -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2013년 1월 말 개정할 예정임.
- 둘째,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도입하고 자기부담금 수준을 다양화(10%→10%, 20%)하였음.
 - 또한 보험료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, 갱신 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클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음.
 -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.
- 셋째,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영업확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였음.
 - 또한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 지표금리 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조정률²⁾을 축소하는 등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였음.
 -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.

(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, 금융위원회, 12/28)

1)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.

2)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공시이율에서 회사가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한 범위.